직원인사위원회규정

제정 2017. 7. 1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대학이라 한다)의 직원인사위원회(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) 본 규정에서 '직원'이라 함은 일반직, 기술직, 무기계약직, 계약직을 말한다.
- **제3조(조직)** ① 인사위원회는 7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직원인사담당 부서장이 위원장이 된다.
 -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직원인사담당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제4조(기능)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직원인사규정 제20조의2(성과향상)에 관한 사항
 - 2. 직원인사규정 제20조의3(신분변동)에 관한 사항
 - 3. 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5조(간사) 인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.
- 제6조(회의)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 원장이 소집한다.
- 제7조(의사 및 의결 정촉수) 인사위원회의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- 제8조(회의의 비밀유지)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참석등 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지 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9조(운영)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